

# 甲申政變「政綱」에 대한 再檢討

李 光 麟

I. 序 言

III. 政綱과 관련된 문제

II. 政綱에 대한 資料

IV. 結 語

## I. 序 言

1884년 12월 4일 金玉均(1851-1894) 등의 開化黨 人士들이 일으킨 甲申 政變은 3일만에 失敗로 돌아갔다.

그 짧은 기간 동안 開化黨 人士들은 5일 새벽 政權을 수립하여 人事行政을 斷行하고 그 날 저녁에서 6일 새벽까지 앞으로 實施해야 될 政綱을 協議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承旨들에게 정리시켜 國王의 傳敎로 발표하려던 찰나 淸軍의 공격을 받아 무산되고 말았다.

政綱의 內容은 開化黨이 指向하고 있던 政治改革의 理想이었다. 開化黨 人士들은 오래전부터 政治改革을 논의하였고, 혹 入待할 기회가 있으면 國王에게 改革의 必要性을 말하였던 것 같다. 日本의 『自由新聞』 明治 17년 (1884) 12월 25일자 「朝鮮警報」에,

暗勅. 지난 4일의 騷動에 이어 朝鮮政府의 改革의 일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獨立黨 員과 國王과 사이에 充分히 熟議한 바가 있었던 모양으로 4일 이전에 獨立黨 中 朴 泳孝, 金玉均, 洪英植, 徐光範 등과 같은 무리들은 때때로 宮城에 불려가 무엇인가 國王에게 直言한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때는 저녁 7시 御前에 불려가 새벽 5시 頃

까지도 退出하지 않은 일도 있었다 한다. 매번 반드시 다른 사람을 물리쳐 國王 가가 이 侍坐를 許諾치 않았던 것이므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일어난 事件에 關해 이들에게 무엇인가 國王으로부터 暗勅, 即 密勅을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고 있다. 이 글 중에서 獨立黨이란 開化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政變전에 國王과 開化黨 人士들 사이에 政治改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음을 暗示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또 『尹致昊日記』 1883년 11월 2일 條에도

(上略) 余又言曰 外國則百司官員各守其職 外務不干內務之事 禮部不干工部之事 假令一年首朔 諸官司 各撰其一年所用預記 付之戶部 戶部但分配金銀而已 故官員能通其所任之職 事不紊亂 而政治有道 我國則不然 外務官員調理內務事 戶部官干涉工部事 夫人無兼才 事有分別 何可一人而兼兩務乎 故我國第一事 當政變政府組織 而每事可成 兩殿可否問無 前不教至曉明拜退 即歸歷大致文家----(下略)

이라 있듯이, 尹致昊는 國王에게 外國의 例에 따라 各 行政機關의 責任分擔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정부 조직을 고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尹致昊는 당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즉 外衙門의 主事에다가 駐韓美國公使館의 通譯官으로 있었다. 通譯官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는 國王으로부터 寵愛를 받아 자주 入闕하였다. 위의 引用文 중 새벽 宮城에서 물러나왔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날 밤에 入闕하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는 國王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리고 宮城에서 물러나올 때 劉大致 집에 들렀다고 있음도 흥미롭다. 사실 尹致昊도 본시는 開化黨에 所屬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劉大致는 開化黨 人士들로부터 指導者로 추앙받고 있었으니,<sup>1)</sup>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요컨대 政治改革이 담겨져 있는 政綱은 開化黨 人士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었고, 또 國王에게까지 上奏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1) 拙著『開化黨研究』(一潮閣, 1973) 所收「甲申政變에 대한 一考察」과「숨은 開化思想家 劉大致」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政綱을 否認하는 사람이 나타나 우리들을 당황케 하였다. 正確히 말한다면, 1960년 日本學者 山邊健太郎이 政綱 14조가 들어 있는 金玉均의 『甲申日錄』 內容은 虛僞와 錯誤가 뒤섞여 信憑할 수 없다 하였고, 또 政綱 14조도 실제로 公布되었는지 의심스러우며, 상당한 조목은 다분히 金玉均이 평소 생각했던 것을 甲申日錄을 著述하면서 그 속에 收錄한 것이라고 하였다.<sup>2)</sup> 이에 대해 筆者는, 1972년 「甲申政變에 대한 一考察」이란 論文을 쓰면서 1880년대 刊行된 文獻을 갖고 山邊健太郎의 主張을 批判한 바 있으나,<sup>3)</sup> 당시 너무 性急하게 썼던 것 같고, 또 그 뒤 몇 가지 韓國, 日本, 中國, 美國側 資料를 수집할 수 있어서 再檢討해야 될 必要性을 느꼈다. 그러므로 여기에 또 다시 붓을 들게 되었다.

## II. 政綱에 대한 資料

### 1. 韓國側 資料

#### (1) 罪人 申箕善 鞠案<sup>4)</sup>

이 資料는 筆者가 앞서 山邊健太郎의 主張을 批判하였을 때 使用하였었다. 그러나 당시 充分히 설명을 加하지 못했던 것 같으므로 再引用할까 한다.

申箕善은 開化黨에 屬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政變이 일어난 다음날, 즉 1884년 12월 5일 아침 식사를 하면서 「朝報」를 보았더니, 자기가 都承旨로 任命된 사실을 알고 昌德宮에 들어갔다가 開化黨 人士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글을 잘하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政變 중 人事行政에

2) 「朝鮮改革運動과 金玉均-甲申政變과 關聯하여」, 『歷史學研究』 247호, 東京, 1960. 11.

3) 「甲申政變에 대한 一考察」과 『開化黨研究』에 收錄되어있는 「金玉均의 甲申日錄에 대하여」 참조.

4) 『推案及 鞠案』 30 (亞細亞文化社, 1978) 所收.

서 開化黨 人士들이 都承旨로 任命하였었다. 그리하여 그는 멋도 모르고 宮城에 들어갔다가 開化黨 人士들이 하라는 대로 하였고, 政變이 3일 天下로 무너진 뒤 체포되어 義禁府에 갇히었고, 한 때 全羅道 興陽縣 呂島에 流配되었다가 1887년 5월 22일 (음력 高宗 24년 4월 30일) 裁判을 받았다.<sup>5)</sup> 그는 開化黨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므로 開化黨 政權에서 기초한 政綱에 대해 가장 客觀的인 立場에서 陳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 內容은 史料의 價値가 높다. 다음의 기록 중 「問」은 裁判官의 물음이고 「供」은 申箕善이 陳述한 내용이다.

問. 所謂次對舉條中 何事可合 何事不合乎.

供. 伊時矣身問於英植 則英植曰 多事之時 宜有是舉云 矣身亦暫見之而已 年久未能詳記 而大略懲貪墨·立紀綱·罷惠商局等事 謂之可合也 宮內演兵也 出巡查也等數條件事 矣身言以不合也 且既爲次對 則無如日前之變 而未知變從何出 而何不令在右捕廳查覈賊而捕之也爲言矣 其後果入於舉條中也 其中可合云之數條 矣身亦有手草矣……(下略)

이에 의하면, 次對舉條 즉 大臣들이 上奏하면서 거론한 조목 중 어떤 것이 너의 마음에 들었고, 어떤 것이 너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하고 裁判官이 묻자 申箕善은 貪墨을 懲戒하고 紀綱을 세우며, 惠商公局을 革罷하는 조목 등은 나의 마음에 들었고 宮內演兵과 巡查制度의 설치 등은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나의 마음에 드는 몇 條目을 내가 직접 썼다고 陳述하였다.

(2) 『朴定陽全集』 卷2 「從宦日記」<sup>6)</sup>

甲申년(1884) 10월 18일과 19일 條에 政變에 대해 쓰고 있다. 당시 朴定陽은 內衙門 協辦으로 機器局 總辦을 겸하고 있었고, 平日처럼 機器局에 出勤하였었다. 그는 每日같이 日記를 썼다. 그 중에서 10월 18일 조에

• 凡係全國財政 並屬度支事 有傳教

• 左右營使洪英植 拜相 代以徐光範爲之 兼察右捕將 以朴泳孝爲都承旨

5) 同上書; 『承政院日記』 高宗 24년 4월 30일, 閏 4월 1일 條.

6) 亞細亞文化社, 1984.

라는 조목이 있다. 그러니까 政變 중 人事行政이 진행되는 가운데 傳敎로 全國의 財政을 度支기관, 즉 戶曹에 예속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朴定陽은 開化黨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變 중 開化黨 人士들이 傳敎로 全國의 財政을 度支기관에 맡겼다고 있음은 우리들의 注目を 끌게 한다.

### (3) 『大韓季年史』上卷<sup>7)</sup>

위의 책은 鄭喬(1856-1925)가 著述한 책이다. 그는 1894년이후에는 開明郡守로 徐載弼이 獨立協會를 창설하였을 때에도 呼應하여 활동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甲申政變에 대해서는 매우 批判적이었던 것 같다. 위의 책 高宗 21년 冬 10월 18일 조에,

十八日午刻 亂黨自除拜 英植自爲右議政 (泳孝兼帶前後營使 玉均自爲戶曹參判 兼宣惠廳堂上 光範兼帶左右營使 協辦交涉通商事務 仍行署理督辦 徐載弼爲前營政 領官) 一日間 凡三回次變更 英植定國政改革案 其大要擴張國權 與各國對等交際 絕清國關係 抑貴族專權 伸農工商利於常民 登庸人才之事 於是兵權財權 并歸亂黨之掌握 亂黨攘臂搖頭 言無忌憚至有廢立之議

라 하여 亂黨, 즉 開化黨 人士들이 스스로 人事行政을 斷行하였다고 있음은 그 좋은 例이다. 위 조목 속에서 洪英植이 國政改革案을 制定하였다고 하고 其大要를 말하면, 國權을 擴張하여 各國과 對等한 관계를 맺는 한편 清國과의 事大관계를 끊고 貴族, 즉 兩班의 權限을 抑制하여 農工商의 利權을 一般 常民에게 미치게 하였다고 있다.

## 2. 中國側 資料

### (1) 『清季中日韓關係史料』卷3<sup>8)</sup>

이 책 중에는 甲申政變에 관한 記事가 매우 적다. 단지 人事行政에 관해 설명하면서 「傳曰 凡係全國財政 并屬度支」라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것은

7) 國史編纂委員會, 1956.

8)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台北, 1973.

韓國側資料의 『朴定陽全集』, 『從宦日記』에 들어 있는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3. 日本側 資料

#### (2) 『明治十七年朝鮮京城事變始末書』<sup>9)</sup>

이것은 駐韓日本公使 竹添進一郎이 作成하여 本國의 外務卿 井上 馨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다음날 5일 아침 國王은 承政院을 통해 命을 내려 內閣을 改革하였다. 其改正 內閣의 職員은 다음과 같다고 들었다.……(中略) 이 날 (6일) 아침 大臣의 除目(人事 行政을 가리킴……譯者)이 있었다. 李載元이 左議政에, 洪英植이 右議政에 오르고……(中略) 徐光範이 左右營 監督 兼 捕盜大將을 맡았다. 軍國事務衙門 及 惠商公局을 廢止하였다고 들었는데 午後 3시에 이르러 國王이 大政一新의 勅語를 國內에 내리고자 左·右議政을 부르시고 命을 내리려 할 때 갑자기 爆竹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 이는 첫번째의 銃聲이었다. 사람들은 이거 야단인데 하고 놀라는 중에 國王이 가장 놀라는 것 같았다.

고 있다. 이에 依하면 惠商公局이 폐지되었음을 들었고 또 國王이 大政一新의 命을 國中에 내리려는 순간 清軍의 공격이 시작되었다고 있다. 大政一新의 命이란 필시 政綱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 (2) 井上角五郎 著 『漢城透殘夢』<sup>10)</sup>

井上角五郎은 1882년 慶應義塾을 卒業하여 來韓, 다음 해 한국정부에서 『漢城旬報』를 刊行할 때 편집을 도왔다. 그리고 甲申政變을 준비하는 한편 政變에 직접 參加하였다. 또 福澤諭吉이 刊行하던 『時事新報』의 特派員으로서 한국에 대해 많은 記事를 써서 送稿하였다. 자기의 활동상을 지나치

9) 이것은 日本 外交史料館 所藏 「對韓政策關係雜纂—明治十七年朝鮮事變」(文書番號 1-1-2-315)에 들어 있다.

10) 明治 24년(1891) 10월 東京 春陽黨에서 菊版 107면으로 刊行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風俗叢報』 1895년 1월에 刊行된 臨時增刊號에 轉載한 것이었다. 한편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7 政治篇(亞細亞文化社, 1984)에도 收錄되어 있는데 『風俗叢報』에 있는 바를 옮긴 것이다.

게 誇張하는 缺点을 갖고 있기는 하나 政變에 참가하고 目擊한 사람이었던 것이므로 그가 쓴 글은 史料的 價値가 높다. 이 著書 중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보인다.

(上略) 五日 午前 八時 予는 朝報에 接하였다니 이미 政府員의 交迭이 있었다. …(中略) 午後 洪英植은 改革案을 國王殿下에 進奏하여 殿下를 尊敬하여 陛下라고 하였고 王命을 勅이라 稱하였으며 王 스스로 稱하기를 朕이라고 말하고 儼然히 獨立國의 君主의 儀禮를 具備하게 되었다. 改革案의 條項은 그 數가 많으나 其 要旨는 國權을 擴張하여 海外 各國과 對等의 交際를 열기 위해 國民으로 하여금 上下貴賤의 區別없이 하나의 目的을 위해 忠을 다하도록 하고 業에 힘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種種 時弊에 適하는 條項을 羅列하고 그 중에서 兩班의 專橫을 抑制하여 常民의 權利를 높이며 王의 側近 內官을 除去하여 人材登用の 길을 열기로 期約하였다. 또 支那에 對에 急히 使臣을 보내 大院君의 還幸을 促進키로 定하여서 所謂 本屬의 關係를 固코자 하였다. 이어 四營의 兵士를 徵發하여 이들로 하여금 行在所를 護衛케 하고 이로서 新政府의 組織이 全적으로 成立하게 되었다. 생각컨대 日本黨이 變亂前부터 準備 周到하였음을 이것으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日本黨이란 開化黨을 가리킨다. 開化黨이 日本의 明治維新을 改革의 모델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었다.

1890년 日本에 國會가 開設되면서 井上角五郎은 衆議院 議員으로 10여 차례나 當選되었다. 이 때문에 名士로 이름을 날리게 되어 자연히 많은 回顧談도 남기게 되었다. 그 중 한국의 甲申政變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저기서 하게 되었는데 「朝鮮事變에 就하여」라는 것도<sup>11)</sup> 그런 종류에 屬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略) 五日의 아침 政府의 更迭이 發表되고……(中略) 其 午後에 이르러 新政府는 御前會議를 열고 洪英植이 나아가 國政釐革案을 奏上하였다. 더욱이 有爲의 人材를 招聘하여 開國進取의 策을 樹立해야 되겠다고 하여 國王은 後藤象次郎을 부르겠다는 內旨를 내렸으므로 본인은 사람을 보내 이 뜻을 日本에 傳達하였다.……(下略)

11) 『明治文化研究』5卷4册, 東京.

여기서 洪英植이 國王 앞으로 나아가 奏上한 國政釐革案이란 政綱을 가르킬 것이다. 그런데 國王이 日本의 政治家 後藤象次郎을 부르겠다는 뜻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政變의 소용돌이 속에서 國王이 어리둥절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므로 後藤을 초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 金玉均이 後藤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불러야 되겠다는 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을 보면 井上의 이야기 중에는 誇張된 것이 많다.

井上角五郎의 傳記가 刊行되면서 더욱 그러했던 것 같다. 그의 傳記는 두번 刊行되었다.<sup>12)</sup> 두번째 傳記 중 위에서 引用한 글을 다음과 같이 項目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나서 다른 내용까지 添加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十二月五日의 아침에 「朝報」(布告書)로 政府의 更迭이 發表되었다.……(中略) 同日의 午後에 이르러 御前會議가 열렸다. 이 때 洪英植이 삼가 國政釐革案을 作成하여 奏上하여 允許를 받았다. 그 案의 要旨는 다음과 같았다.

- 一. 在來의 官制를 一變하여 內閣及 八省을 설치할 것.
- 一. 科擧及第의 方法을 廢할 것.
- 一. 人材登庸은 門地에 따르지 말고 널리 이를 四民에게서 求할 것.
- 一. 內官을 廢止하고 內官도 또한 人材에 따르된 登庸의 길을 넓힐 것.
- 一. 國王殿下를 고쳐 陛下라고 稱하고 傳을 다시 勅으로 稱할 것.
- 一. 支那에 對하여 歲聘의 禮를 廢할 것.
- 一. 科擧及第의 方法을 廢할 것.
- 一. 全權大使를 支那에 派遣하여 우리 나라가 獨立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大院君의 放還을 請求할 것.
- 一. 本來 官員으로 穢汚의 所行이 있는 者를 各各 極刑할 것.
- 一. 內外公債를 募集하여 運輸·教育·軍備의 充實을 期할 것. (『張嬪』原稿에 依함)

이렇게 하여 儼然한 獨立國의 基礎를 定하여 體面을 유지코자 하였다. 이러한 條項 외에 다시 附帶의 奏文이 만들어졌다. 支那에 使臣으로 金允植을 맡게 하고 王妃 閔氏를 廢하여 張氏를 세우기로 하였다. (張嬪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나온다). 또한 이 때 日本에서 國師를 불러 開國進取의 國策을 세운다는 件이 議決되어 國王으로부터 伯爵 後藤象二郎氏를 招聘한다는 內旨가 있었다.

12) 『井上角五郎君略傳』(井上角五郎君功勞表彰會, 東京, 1919)과 『井上角五郎先生傳』(井上角五郎先生傳記編纂會, 東京, 1943)이 그것이다.

先生은 그 內旨를 받자 즉각 사람을 釜山에 보내 이를 後藤伯에게 傳達하는 手續을 取하였다. 이와 같이 新政府의 조직이 곧장 만들어진 것은 獨立黨의 準備가 얼마나 周到했던가를 알 수 있다.……(下略)

위에서 1, 2, 6, 7 項은 앞의 引用文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시대가 내려올수록 더욱 添加되어간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리고 金允植을 中國에 使臣으로 派遣하려고 하였는지도 의문이 가고 또 맨앞에 보이는 朝報를 布告書로 해석하고 있음도 이상하다. 그것은 政府의 새 소식을 傳達하는 一種의 신문이었다.

### (3) 『朝野新聞』 明治 17년 (1884) 12월 21일자 「朝鮮事件」

『朝野新聞』은 日本의 民權運動 기관지였다. 그리고 한국에는 特派員 (社友라고 하였다)을 파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記事 內容이 비교적 正確하다. 「朝鮮事件」이란 제목으로 1면과 2면에 걸쳐 甲申政變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內容이 보인다.

朝鮮開化黨의 議決. 지난 4일 閔泳翊이 暗殺되었던 날 밤 金玉均·朴泳孝 등의 開化黨이 大闕에 이르러 國王에 謁見하고 그날 밤 改革을 行하여 自黨의 人들을 각각 昇進시켜 顯職에 任命한 사실은 이미 本紙에 記載하였는데 이날 밤 開化黨의 大臣이 議決한 改革의 條項은 內官局을 廢止할 것. (內官은 陰黨이 없는 사람으로 宮中에 奉仕하고 其 種族 大體로 三四萬이 있다. 이들을 管轄하는 것이 內官局이다.) 惠商局을 廢止할 것. (惠商局은 京城의 行商者를 모아 支配하는 곳으로서 其 員數 大體로 七, 八萬이나 된다. 그 중에는 惡漢無賴徒도 섞여 있어 所謂 破落戶의 集合體이므로 크게 施政에 妨害를 주는 자들이라고) 등으로 其他 都府를 平壤으로 옮길 것, 宮內省을 설치할 것, 京城內의 溝渠를 浚鑿할 것도 이미 議決하여 現在 內官局及 惠商局의 廢止 등은 다음 날부터 이를 實行하였다고 들었다.

위 引用文에는 閔泳翊이 暗殺되었다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는 부상을 입고 미국의 의사 「알렌」(Horace N. Allen)의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開化黨 政權에서 內官局과 惠商局을 廢止하였다는 것과 首都를 平壤으로 옮기고 宮內省을 설치하여 서울의 도랑 준설을 하기로 議決

하였다고 있다.

한편 『朝野新聞』 明治 18년 (1885) 1월 14일자에는 앞에서 소개한 『明治十七年朝鮮京城事變始末書』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 그러니까 開化黨政權에서 軍用(國의誤……筆者) 事務衙門及 惠商局을 廢止하였다는記事가 실려 있다.

(4) 『時事新報』 明治 17년 (1884) 12월 22일 자에 실려 있는 「朝鮮革命政府의計劃」

『時事新報』는 井上角五郎 등을 特派員으로 任命하고 있어서 그들이 써서 透稿한記事는 比較的 正確하였다. 위의 글 중 앞部分에는 政變前의 한국政治 實態를 설명하고 있고, 이어 다음과 같은 內容이 실려 있다.

이번 京城에서 事變이 일어나 지난 4일 밤 중에 事大黨의 大部分이 殺害되어 其政權을 잃었고 獨立黨이 代身하게 되었으며 5일 낮에는 政府官吏가 이에 따라 交送되었다. 그리하여 5일 밤에서 6일 저녁까지 獨立黨이 政治의 改革을 꾀하고 計劃을 한 것이 매우 많다. 그것을 차례로 설명한다면 第 1. 內侍府를 廢止하였다. (6일 이미 實行되었다.) 內侍府는 所謂 宦官의 本廳으로 宦官은 國王及 王親의 給仕, 宮殿及 山陵의 侍衛를 맡고 있었다. 또 烽臺, 史庫 등도 모두 宦官의 監守하는 바 되었다. 其數는 대개 二, 三萬名, 그 중에서 公平廳에 宦官이 있어 百官 萬民의 上書, 建言이 반드시 이 官廳을 거쳐 國王에 전달되고 國王의 論達·命令도 또한 이 官廳을 거쳐 百官 萬民에게 도달된다. 이런 까닭으로 그 힘이 컸음은 비유하여 설명할 것이 없다. 또한 宦官은 대개 賂物을 貪낸다. 이 때문에 宦官의 本廳인 內侍府를 廢止하고 지금까지 宦官이 아니면 여기에 任命되지 못하였던 여러 官廳도 今後 어떤 宦官도 任命되지 않을 것이나 6일 이 命令을 내리고 一旦 實行되었지만 끝내 永續할 수 없었으니 慨歎해야 될 일이다.

第 2. 宮內省을 설치할 것을 議論하였다. (아직 實行에 이르지 못하였다.) 宮內省은 그 조직이 전적으로 日本의 宮內省을 모방하여 獨立黨首로 추대받고 있는 朴泳孝로 하여금 宮內卿으로 하여 여기에 親軍 前營(近衛兵과 같다) 大將과 左捕盜(警視局과 같다) 大將을 兼任케 하여 漸次로 憲兵及 警察의 制度를 세워 그 格式을 日本 것으로 하여 전적으로 王室을 尊崇하려는 계획이라 한다.

第 3. 庶民을 同等하게 한다. (이미 實行되었다.) 士農工商을 따지지 않고 文武로

나는다. 宦官으로 才智있는 者는 各各 相當의 官位를 주어 門地의 弊를 깎 생각으로 劉鴻基(中人으로 參判以上에 任命될 수 없는 사람)를 左議政으로 任命할 계획이라고 한다. 但 昨年末 朝鮮政府에서는 이 뜻을 全國에 布示했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름뿐이고 實際로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으나 또한 永續할 수 없다니 慨歎할 일이다.

第 4. 遷都를 議論하였다. (但 아직 國王의 允許를 받지 못하였다.) 京城과 平壤과는 全國 施政의 便, 貿易·運輸의 利라는 點에서 論한다면 京城은 輒선 平壤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平壤은 西北 國境에 가까워 支那及 露國의 侵入을 막는데 便利하기 때문에 그러한 論議가 있었다 한다.

第 5. 收稅의 改革. 但 아직 細目을 議論함에 이르지 못했다.

第 6. 全國의 丈量·田畝의 改稅. 但 아직 國王의 允可를 얻지 못하였다.

第 7. 惠商局을 廢止함. (6일에 布告하였다.) 朝鮮에서는 負商·步商 서로 합하여 組合을 세워 이를 政府에서 監督하고 서로 國家에 忠義를 다 한다고 말하나 其實 負商·步商은 日本의 所謂 도박꾼이라 할 수 있어 其 弊甚 매우 크다. 良民 모두 이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번에 其 本局을 廢하고 또한 負商及 步商이 組合을 만드는 것을 嚴禁하였다. 組合員의 數는 當時 八萬餘人이나 되어 全國에 널리 퍼져 있다 한다. 그 밖에 支那와의 關係에 대해 論議한 것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 第 1로는 朝貢使를 廢止한다 등의 條目도 있다. 畢竟 이 改革은 朝鮮을 東洋의 一獨立 國으로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以上으로 開化黨 人士들이 論議한 內容을 引用하였다. 內侍府를 비롯하여 오랫동안 惡弊로 되어 있던 문제들을 論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당장 實施된 것도 있고, 實施되지 못했던 것도 들어 있다. 위의 글에는 12월 5일 밤에서 6일 저녁까지 開化黨 人士들이 政治改革, 즉 政綱을 討議했다고 分明히 밝히고 있다. 5일 밤이면 昌德宮으로 돌아온 뒤이고, 6일 저녁까지이면 淸軍의 공격이 있기 전까지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第3 庶民을 同等하게 한다는 條項 중 劉鴻基(號 大致)를 左議政으로 任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中人(漢醫) 出身으로 身分이 낮았으나 金玉均 등 開化黨 人士들을 뒤에서 指導·指揮했던 것이므로 그런 높은 官職에 任命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것이다. 이 계획으로 우리들은 開化黨 人士들이 目標로 삼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뚜렷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四民平等의 近代國家를 세워보려던 그들의 理想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 4. 美國側 資料

##### (1) 『에비슨 自敘傳』<sup>13)</sup>

여기에는 徐載弼(1864-1951)의 글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1941년 10월 「에비슨」이 미국에서 의사로 활약하고 있던 서재필에게 편지를 보내 甲申政變을 回顧하는 글을 써달라고 요청한 데에 대해 서재필이 이에 응하여 쓴 것이 『에비슨 自敘傳』에 들어 있다.<sup>14)</sup> 서재필이 쓴 회고록은 政變이 있은지 37년이 지난 뒤의 것이어서 政變을 美化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서재필이 政變에 직접 참가하였던 사람인 만큼 史料的 價値는 높다고 하겠다. 당시 서재필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政變이 일어난 뒤) 당시의 有名한 學者로 議政大臣이 任命되고 政府의 首班으로 金玉均·朴泳孝·徐光範·洪英植·尹致昊, 其他 지금에는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開化黨의 지도자들로 內閣이 구성되었다. 어찌든 國王은 議政大臣과 內閣大臣들이 起草한 勅令을 기꺼히 署名하려 하였고, 王妃는 어린애처럼 말을 잘 들었다. 國王과 王妃는 開化黨의 지배하에 있었던 3일간 수많은 改革案과 나라의 法令을 公布하였다. 그 때 公布된 새 法令을 모두 기억할 수 없으나 가장 뚜렷한 것으로는 國民들 사이에 存在하였던 兩班·中人·常人과 같은 身分制度의 撤廢, 法廷과 軍隊, 그리고 稅務官署의 再組職, 候補者의 資格試驗을 통한 官職에 任命, 各地方에 公立學校 設치, 公共衛生과 道路의 改善, 貧者를 위한 住宅마련, 迷信行爲 禁止, 상투를 찢고 없애는 것, 外國衣服 着用, 國家의 貨幣 安定, 奴隸制度 廢止, 그 밖에도 多數 있었다. 물론 이러한 改革이 바람직하기는 하였으나 無識한 國民大衆에게 자극을 줄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또 過激하고 非實用的인 法令들이 많았다. 젊은 開化黨 人士들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였으나 政治家의 지혜나 政治의 經驗이 不足하였다. 開化黨 人士들은 愛國의 이고 革新的의이었으나 激하기 쉬웠고, 참울성이 적었다.

13) Memoirs of life in Korea by O.R. Avison, M.D. 이 회고록은 1940년 6월 30일 에비슨의 80세 생일 날 서문을 썼다고 있다. 연세 대학교 도서관에 사본이 있다.

14) Memoirs, p.156. 참조

以上の 글로 많은 改革案과 法令이 國王의 署名을 받은 뒤 (傳敎로) 公布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身分制度의 撤廢, 法廷과 軍隊, 그리고 稅務官署의 再組織은 公布되었던 것 같지만, 그 밖에 候補者의 資格試驗을 통한 官職의 任命, 公立學校 設치, 公共衛生과 道路의 改善, 貧者를 위한 住宅마련, 迷信行爲 禁止, 상투를 자르고 없애는 것, 外國 衣服 着用, 國家의 貨幣 安定, 奴隸制度 廢止 등의 法令이 심의되고 公布되었던 것인지는 의심이 간다.

### Ⅲ. 政綱과 관련된 문제

金玉均이 쓴 甲申日錄에는 이 날 (12월 5일) 政綱을 公布했고 그것을 대략 적으면 다음과 같다 하고 14條를 열거하고 있다. 대략이라고 쓰고 있으니 까 더 많았을 것 같지만 그 수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날, 즉 12월 5일에 政綱을 公布했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까닭은 開化黨 政權에서 一括해서 政綱을 公布한 시기는 12월 6일 오후 3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 5일 說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金玉均이 이 날에 公布했다는 이야기는 錯誤에서 온 것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斷定해서 말을 할 수 없으나 人事改編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國王의 命命, 즉 傳敎로 公布했던 것이므로 그렇게 되거나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12월 5일 오전 10시 國王이 景祐宮에서 李載元 집으로 옮긴 이후 대대적으로 人事改編이 斷行되고 또 傳敎로 改革을 公布하였던 것이므로 그렇게 되었던 것 같다. 그것은 앞서 소개한 井上角五郎 著述의 『漢城迺殘夢』에, 5일 오후 洪英植이 國王에게 改革案을 바쳐 실시하였다고 있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하면, 政綱을 一括的으로 公布한 것은 12월 6일이었으나 5일에도 傳敎로 그 一部가 公布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던 것 같다.

傳曰「凡係全國財政 並屬度支」라는 條項은 12월 5일 金玉均이 戶曹參

判에 任命되면서 傳敎로 公布되었던 것이므로 金玉均이 그렇게 썼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甲申日錄』에서 金玉均이 12월 5일 14개 政綱을 一括적으로 公布했다는 생각에서 썼다면 잘못이지만 이날에 人事改革도 있었던 것이므로 便宜上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金玉均이 『甲申日錄』 속에 적고 있는 政綱 14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一. 大院君不日陪選事(朝貢虛禮 議行廢止)
- 一. 閉止門閤 以制人民平等之權 以擇官 勿以官擇人事
- 一. 革改通地租之法 杜吏奸而救民困 兼裕國用事
- 一. 內侍府革罷 其中如有優才 通同登用事
- 一. 前後奸貪病國尤著人 定罪事
- 一. 各道還上水永臥選事
- 一. 奎章閣革罷事
- 一. 急設巡查 以防竊盜事
- 一. 惠商公局革罷事
- 一. 前後流配禁錮之人 酌放事
- 一. 四宮合爲一營 營中抄丁 急設近衛事(陸軍大將 普擬世子宮)
- 一. 凡屬國內財政 政總由戶曹管轄 其餘一切財簿衙門革罷事
- 一. 大臣與參贊(新差六人 今必書其名) 課日會議於 閣門內議政所 以爲稟定 而布政令事
- 一. 政府六曹外 凡屬冗官 盡行革罷 令大臣參贊酌議以啓事

前章에서 提示한 資料와 이 14개를 比較해 보면, 첫째로 韓國側 資料 중 申箕善 鞠案에서 開化黨 人士들이 政綱을 協議할 때 자기(申箕善) 마음에 드는 것으로는 貪墨을 懲戒하고 紀綱을 세우며 惠商公局을 革罷하는 條目이라 하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는 宮內演兵과 巡查制度의 설치 등의 條目이라 하였다. 貪墨을 懲戒하고 紀綱을 세우는 조목은 14개조 중 제 5조, 惠商公局 革罷는 제 9조였고, 宮內演兵은 제 11조, 巡查制度의 설치는 제 8조였다. 그러니까 申箕善이 좋아하지 않았던 조목은 모두 新式제도와 관련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朴定陽全集』에 나오는 資料, 즉 全國의 財政을 度支기관, 그러니까 戶曹에 預속시켰다는 것은 14개조 중 제 12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大韓季年史』에, “國權을 擴張하여 各國과 對等한 關係를 맺는 한편 淸國과의 事大關係를 끊는다”는 것은 14개조 중 제 1조, “貴族의 權限을 抑制하여 農工商의 利權을 一般常民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은 제 2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中國側 資料는 『朴定陽全集』에 나오는 기록과 같은 것이므로 14개조 중 제 12조에 해당된다.

그리고 日本側 資料에서 『明治十七年朝鮮京城事變始末書』에 軍國事務衙門과 惠商公局을 廢止했다고 있는데 惠商公局의 廢止는 14개조 중 9조에 해당된다. 軍國事務衙門의 폐지에 대해서는 政綱 중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나, 혹 4개조 중 제 4조, 즉 內侍府의 革罷를 가리키는 것이나 아닌 지 모르겠다.

井上角五郎의 『漢城酒殘夢』에는 여러 가지 改革案이 들어 있다. 그 내용 중에서 國王殿下를 陞下로, 傳를 勅으로 稱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國權을 擴張하여 海外 各國과 對等의 交際를 하여……(中略) 支那에 對해 急히 使臣을 보내 大院君의 還幸을 促進키로 定하여서 所謂 本屬의 關係를 끊고……(下略)” 라고 있는데 그것은 14개조 중 제 1조에, “國民으로 하여금 上下貴賤의 區別을 없애고……(中略) 兩班의 專橫을 抑制하여 常民의 權利를 높이며……(下略)” 라는 것은 제 2조에, “王의 側近 內官을 除去하여 人材登用의 길을 열기로 期約하였다” 는 것은 제 4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朝野新聞』 明治 17년 12월 21일자 「朝鮮事件」에서 內官局의 廢止는 14개조 중 제 4조, 惠商局의 廢止는 제 9조에 해당된다. 그 밖에 首都를 平壤으로 옮긴다던가, 서울의 도랑을 준설한다는 것은 開化黨 政權에서 議決을 하였으나 實行에는 옮기지 못하였다고 있다.

다음으로 『時事新報』明治 17년 12월 22일자 「朝鮮革命政府의 計劃」에서 內侍府의 廢止는 14개조 중 제 4조, 庶民을 同等하게 한다는 것은 제 2조, 惠商局 廢止는 제 9조에 해당된다. 그리고 宮內省의 설치와 首都를 平壤으로 옮기는 문제, 收稅의 改革, 全國의 量田 등을 論議했으나 國王의 允許를 받지 못하였다고 있다.

끝으로 미국측 자료에서 身分制度의 철폐와 法廷, 軍隊, 그리고 稅務官署의 再組織은 제 2, 3, 5, 11, 12 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밖의 것은 알 수 없다.

이상으로 제시한 資料와 『甲申日錄』에 보이는 14개 政綱과를 對照·檢討하였다. 그리하여 『甲申日錄』에 나오는 3, 4, 5, 8, 11, 12조는 開化黨 政權에서 論議되고 그 一部는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論議가 되기는 하였으나 國王의 允許까지는 받지 못했다고 있다. 宮內省의 설치와 首都를 平壤으로 옮기는 문제들은 그런 조목들이다. 그렇다면 위 資料에는 보이지 않고 『甲申日錄』에만 보이는 조목, 이틀테면 제 6, 7, 10, 13, 14조, 즉 앞으로 還上을 거두지 않겠다는 것, 奎章閣 廢止, 流配人, 禁錮人 석방, 大臣과 參贊이 매일 모여 나라의 정책을 定한다는 것, 不必要한 기관의 廢止 등은 어떻게 된 것이었을까? 開化黨 政權에서 論議되었기 때문에 『甲申日錄』에 들어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開化黨 人士들 간에 平素, 論議되었고 國王을 謁見할 경우 개혁을 해야 된다고 主張했던 것이나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公布되어 실시된 것도 있고 실시 안된 것 중에는 開化黨 人士들 간에 論議되고 또 國王에게 改革을 主張했던 것들이 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表로 제산하면 다음과 같다.

資 料	甲申日錄 「政綱」에 들어 있는 條目과 같은 內容	國王의 允許를 받지는 못했으나 開化黨 政權에서 論議된 條目
A. 韓國側		
(1) 申箕善勅案	5, 9, 11, 8.	
(2) 朴定陽全集	12.	

資 料	甲申日錄「政綱」에 들어 있는 條目과 같은 內容	國王의 允許를 받지 못한 條目이나 開化黨 政權에서 論議된 條目
(3) 大韓季年史	1.	
B. 中國側		
(1) 清季中日韓關係史料	12.	
C. 日本側		
(1) 明治十七年朝鮮京城事變始末書	4, 9.	
(2) 漢城遺殘夢	1, 2.	
(3) 朝野新聞	4, 9.	平壤으로의 首都移轉, 서울의 도량 寸설
(4) 時事新報	2, 4, 9.	宮內省설치, 平壤으로의 首都移轉, 收稅改革, 全國 量田
D. 美國側		
(1) 에비슨 회고록	2, 3, 5, 11, 12.	

#### IV. 結 語

以上으로 甲申政變 時의 政綱을 살펴 보았다. 당시의 韓國, 中國, 日本, 美國側 資料와 比較 檢討해 보면 日本學者 山邊健太郎이 主張했던 것처럼 政綱의 公布를 否認하거나 『甲申日錄』에 들어 있는 政綱 14조를 金玉均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었다고 간단히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甲申日錄』에 들어 있는 것처럼 1884년 12월 5일에 一括的으로 政綱이 公布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날에는 傳敎의 形式으로 一部 公布되었었다고 보는 것은 옳을 것 같다.

한편 開化黨 人士들은 오래전부터 理想을 갖고 政變을 준비하였던 것이므로 政綱에 대한 論議를 계속하였고, 또 國王을 謁見할 기회가 있으면 언

제나 政治改革의 必要性을 강조하면서 政綱에 대해 이야기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日本新聞에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政變을 일으키면서 즉각적으로 人事改編을 斷行하고 改革에 着手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것은 開化黨 要인들의 用意周到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政綱 14개조는 開化黨 政權에서 논의되고 그 一部는 실시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內官局의 설치와 平壤으로의 首都移轉문제는 政變을 일으킨 뒤 갑자기 論議가 되었고 國王의 允許도 받지 못한 것이었다. 끝으로 政綱이 갖는 歷史的 意義에 대해서는 이미 適切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므로,<sup>15)</sup> 여기서는 省略하겠다.

15) 糟谷憲一, 「甲申政變·開化派 研究의 課題」,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2, (朝鮮史研究會, 東京, 1985. 3) 참조.